변경 대비표

에셋플러스자산운용㈜

1. 대상 투자신탁: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[주식]

2. 변경시행일(효력발생일): 2026.08.28

3. 변경사유: 환매대금 지급 주기 단축

4. 변경내용

<규약>

항 목	현 행	변 경(안)
제 27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②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(집합투자재산을 보관 ·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9 영업일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10 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②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(집합투자재산을 보관 ·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6 영업일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 28 조(환매연기)	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6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7 영업일 전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8 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	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6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4 영업일 전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5 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
부칙		**제 1 조 (시행일)** 이 신탁계약은 2026 년 8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